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교 1학년 건강검진 의무화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교 1학년 건강검진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 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교 1학년 건강검진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20세가 되지 아니한 학생을 건강검진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1학년 학생. 다만, 학생이 해당 연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은 청소년기와 성년기로 구분되며, 각각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초 1·4, 중1, 고1에 대하여 질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은 초·중·고 재학 연령인 6세부터 18세 사이에서 3년 주기로 시행됨.
 - 「국민건강보험법」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은 2년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정하였는바, 성인 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음²⁾.

1)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국가건강검진 비교표 >

구분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 건강검진	
	영유아검진	학생 검진	학교밖 청소년	일반	암검진
대상	0~5세	6~18세	9~18세(미취학)	20세 이상	20세 이상
검진 항목	문진·진찰, 발달평가 등 21개	척추측만증, 혈액·흉부 X-선 등 24개	21개 * 매독, HIV, 자궁경부암 추가	혈액·흉부 X-선 등 25개	6개 (위·유방·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
검진 비용 ('23년)	832억 원	410억 원 (175만명)	5.2억 원 (약1만명)	7,735억 원	1조 3,077억 원
소관 부처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건보공단 위탁)	복지부	복지부

자료: 교육부

- 이처럼 학생 건강검진은 6~18세를 대상으로 하고, 성인 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19세가 배제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성인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학생, 즉 19세가 되는 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 대학생의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대학 신입생의 건강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차원의 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 개인의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별도로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일반 성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건강 위험 요인이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어, 별도의 검진 제도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 19세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검진은 초 1·4, 중1, 고1과 같이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인 검진은 홀수·짝수 연도에 각각 홀수 연도·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모든 성인이 20세가 되는 해부터 2년을 주기로 검진을 받음.

즉, 청소년 검진은 6~18세, 성인 검진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각각 모든 연령에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이러한 구조에서 19세를 별도로 추가할 경우, 19세가 되는 해에 검진을 받은 직후 이듬해인 20세가 되는 해에 다시 검진을 받게 되어 연속 2년간 중복 검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과 같이 검진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 소요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성인 검진비용을 1인당 52,600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기준 약 30만 1,000명의 신규 검진 대상자에 대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구 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비고
학생 수	40.5만명	30.1만명	
추가 소요예산		약 158억원	30.1만명×52,600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므로,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할 경우 만 19세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1년 만에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검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에서는 검사 주기 등은 의과학적 타당성과 사회 경제적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추가로, 현재 학생 건강검진(초1·4, 중1, 고1)을 건보공단에 위탁 실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이 추진('25.12.10, 법사위 의결)되고 있는바, 동 검진방법은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와 건보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학생 검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검진 대상자를 건보공단(검진기관)에서 특정할 수 없어 시행에 한계가 예상됨 - 또한, 모든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 바, 대학 입학생에 대해서만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항목, 검사주기 등은 의과학적 타당성과 사회 경제적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거쳐 결정되어 왔음 - 대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일반 성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건강 위험 요인이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어, 별도의 검진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대학 (서울대): 이견없음 -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경우 개인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단, 후속 관리체계를 위해 학교 내 검사 장비, 시설 및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임

(15개 대학³⁾): 신중검토

- 현재 2학년(20세)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1학년에 실시하는 단발성 건강검진보다는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 효율적임
- 또한, 대학생 검진을 실시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3) 강남대, 건국대, 국제예술대, 대진대, 동아방송예술대, 배재대, 부산과학기술대, 삼육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장신대, 정석대학, 청강문화산업대, 한양대 ERICA